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10호 2022. 1. 11.(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591호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592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남해군 조례 제2593호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남해군 조례 제2594호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남해군 조례 제2595호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남해군 조례 제2596호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남해군 조례 제2597호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남해군 조례 제2598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7
남해군 조례 제2599호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35
남해군 조례 제2600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38
남해군 조례 제2601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42

규 칙

남해군의회 규칙 제31호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47
남해군의회 규칙 제32호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7
남해군의회 규칙 제33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60
남해군의회 규칙 제34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70
남해군의회 규칙 제35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72
남해군의회 규칙 제36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76
남해군의회 규칙 제37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82
남해군의회 규칙 제38호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90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198호	양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5차)	92
남해군 고시 제2021-199호	남해군관리계획(힐링빌리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94
남해군 고시 제2021-200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02
남해군 고시 제2021-20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변경)	103
남해군 고시 제2021-204호	부윤2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104
남해군 고시 제2021-205호	초전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고시	105
남해군 고시 제2021-206호	장항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고시	107
남해군 고시 제202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09
남해군 고시 제2022-4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110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1796호	2023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공고	113
남해군 공고 제2022-2호	공시송달(보상협의) 공고	122
남해군 공고 제2022-3호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24
남해군 공고 제2022-4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130
남해군 공고 제2022-1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131
남해군 공고 제2022-18호	공시송달공고	132
남해군 공고 제2022-1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134
남해군 공고 제2022-22호	남해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 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궤도) 결정(변경) 재공람·공고 ·	136
남해군 공고 제2022-23호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43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591호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 의장은 남해군청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남해군공보, 남해군 게시판, 남해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회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조 관련)

제정
조례의 개정 **청구서**
 폐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 간
------	------	-----------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제정 []개정 []폐지)
-------------------	------------------------

이유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신청 []필요없음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6조 관련)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	---

대표자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남/여)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6조 관련)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제10조 관련)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신청인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

신청 취지	
-------	--

신청 사유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남해군 조례 제2592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를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의2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를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5의 제목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으로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3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중 “별지 제2호의5 서식”을 “별지 제2호의6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제7조제1항 관련)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 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의회 의원

(인)

남해군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2호의5](제9조의5 관련)

남해군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연 번	관계	성 명	생년월 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해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9조의5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의회의원

(인)

남해군의회의장 귀하

남해군 조례 제2593호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5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94호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를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 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회기” 를 “회기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의장은 남해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95호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 를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 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위원회” 를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96호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를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17조”를 “제13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97호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61조”를 “제7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98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휴가 등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일수는 별표 3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3]

특별휴가일수표(제12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20일	
자녀군입영휴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허가하지 아니한다.)	영 제7조 및 제7조의 10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	
재해구호휴가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	5일 이내	
포상휴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일 이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		

[비 고]

1.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르며, 3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사용은 불가하다.
2. 영 제7조의 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나.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남해군 조례 제2599호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00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 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 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 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01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남해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직위해제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남해군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개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과건(휴직 또는 과건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

제13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남해군수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의회의 규칙 제31호

제255회 남해군의회의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의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12월 22일

남해군의회의장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제4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 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6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4(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 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대표자로 본다.

제78조제1항 중 “법 제79조” 를 “법 제91조” 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법 제86조” 를 “법 제9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 를 “법 99조” 로 하고, “청구서” 를 “요구서” 로 한다.

제93조 및 제94조를 각각 제97조 및 제98조로 하고,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9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96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 71조 등에 따라 남해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 ----- -----.</p>
<p>제46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p> <p>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p> <p>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p>	<p>제46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p> <p><삭 제></p> <p>③----- ----- -----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p>
<p>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p>	<p><삭 제></p>
<p>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이 필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발언자 또는 의회</p>	<p>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주민----- .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p>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신 설>

제63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3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제63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의4(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신 설>

제9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9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p><신 설></p> <p>제93조·제94조 (생 략)</p>	<p><u>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u></p> <p><u>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u></p> <p><u>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u></p> <p><u>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96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u></p> <p>제97조제98조 (현행 제93조 및 제94조와 같음)</p>
---	---

남해군의회 규칙 제32호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12월 22일

남해군의회 의장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7조” 를 “「지방자치법」 제65조”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1/5이상의” 를 “5분의 1 이상의” 로, “「지방자치법」 제83조” 를 “「지방자치법」 제99조” 로, “청구서” 를 “요구서”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남해군의 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5조----- ----- ----- -----.</p>
<p>제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p>	<p>제3조(임기) ① -----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남해군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위반한 경우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 보고 한다.</p>	<p>제5조(기능) ①----- -----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 ----- ----- -----.</p>
<p>제6조(윤리심사 요구와 회부) ① ~ ② (생 략) ③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위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생 략)</p>	<p>제6조(윤리심사 요구와 회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5분의 1 이상의----- ----- 「지방자치법」 제99조----- ----- -----요구서----- -----. ④ (현행과 같음)</p>

남해군의회 규칙 제33호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12월 22일

남해군의회 의장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4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시 험

제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7급 이상 : 20세 이상
-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9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 15 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 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 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8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및 별표 1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3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 16 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3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 17 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8 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8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11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4와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제 3 장 임 용

제 19 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 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 21 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 23 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 24 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5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 26 조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가산점은 별표 19와 같다.

제 27 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제28조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9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규칙 제34호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12월 22일

남해군의회 의장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3. 사무과 주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규칙 제35호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12월 22일

남해군의회 의장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월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 1. 상위계급의 공무원
-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 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폐차·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 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 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규칙 제36호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12월 22일

남해군의회 의장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사무과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회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갈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

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20 . . .

결 재				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서명 또는 날인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동사항 :

여 비		정 산	
-----	--	-----	--

남해군의회 규칙 제37호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12월 22일

남해군의회 의장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남해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남해군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남해군의회 의장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남해군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남해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의회사무과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표 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예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IV.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남해군의회 규칙 제38호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12월 22일

남해군의회 의장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198호

양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5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양아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양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2. 사업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3.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벽련, 두모, 소량, 대량마을)
- 4. 주요사업내용 : “변경없음”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목적 마을회관
 - [건축] 건축 1동(A=330㎡), 비품설치 1식

[토목] 진입로, 주차장, 운동장 각 1개소, 부지조성, 조경식재, 휴게 및 안전시설 각 1식

- 대량마을진입로확포장 : L=110m, B=6.0~8.0m

- 소량마을 안길정비 : L=85m, B=4.0m

○ 지역경관개선

- 소량경관공원조성 : 부지조성 22,124㎡, 산책로 정비 490m(흙콘크리트 포장), 휴게시설 1식

- 벽련마을진입로정비 : 안전난간 124m, 노폭확장 100m, 교행로 2개소

- 두모야생화꽃길진입로정비 : 도로확포장 L=415m, B=5m

- 안내판설치 : 1식

○ 지역역량강화계획(변경없음)

- 교육 및 견학, 홍보 및 컨설팅, 정보화 및 마을경영 각 1식

5. 총 사업비(변경없음) : 4,200백만원(국비 2,940, 지방비 1,260)

6.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14년 2월 ~ 2021년 12월 → (변경) 2014년 2월~ 2022년 6월

7.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1-199호

남해군관리계획(힐링빌리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힐링빌리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29일

남 해 군 수

-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 참조
- 2. 관계도면 : 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붙임]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4	창선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139,219	경상남도 고시 제2018-244호 (2018.07.05)	
변경	14	창선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137,949		

나.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4	창선 개발진흥지구	○ 구역변경 - A = 139,219m ² → 137,949m ² (감 : 1,270m ²)	○ 힐링빌리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6	힐링빌리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복합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172,323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주거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42 일원	33,104		
			관광 휴양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139,219		
변경	16	힐링빌리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복합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171,696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주거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42 일원	33,747		
			관광 휴양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137,949		

나.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6	힐링빌리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 구역변경 - 주거형 : 현황, 지적분할 및 착오정정에 따른 구역변경 - 관광휴양형 : 현황 및 지적분할에 따른 구역변경	○ 사업 시행완료 후 현황을 반영한 지적분할 결과 및 일부 지적면적 착오정정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3,104	증)643	33,747	100.0	
주거용지	6,822	-	6,822	20.6	
녹지용지	14,491	증)725	15,216	45.1	
소공원	301	-	301	0.9	
조성녹지	14,080	증)725	14,805	43.9	
보행자전용도로	110	-	110	0.3	
공공시설용지	11,791	감)82	11,709	34.7	
커뮤니티센터	4,362	-	4,362	12.9	
관리사무소	1,001	-	1,001	3.0	
공공하수처리시설	434	-	434	1.3	
도로	5,994	감)82	5,912	17.5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9,219	감)1,270	137,949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49,223	-	49,223	35.7	
녹지용지	83,525	-	83,525	60.5	
조성녹지	20,499	-	20,499	14.8	
원지형보전녹지	63,026	-	63,026	45.7	
공공시설용지	6,471	감)1,270	5,201	3.8	
주차장	6,471	감)1,270	5,201	3.8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4	604	5,994	-	-	-	3	560	5,813	1	44	181
	변경	4	604	5,912	-	-	-	3	560	5,731	1	44	181
중로	기정	1	136	2,376	-	-	-	1	136	2,376	-	-	-
	변경	1	136	2,325	-	-	-	1	136	2,325	-	-	-
소로	기정	3	468	3,618	-	-	-	2	424	3,437	1	44	181
	변경	3	468	3,587	-	-	-	2	424	3,406	1	44	181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	16	집산 도로	136	창선면 진동리 641-1도	창선면 진동리 653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변경	중로	2	6	16	집산 도로	136	창선면 진동리 641-3도	창선면 진동리 653-1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27	8	국지 도로	157	창선면 진동리 653전	창선면 진동리 664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변경	소로	2	127	8	국지 도로	157	창선면 진동리 653-1전	창선면 진동리 664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28	8	국지 도로	267	중로 2-6	창선면 진동리 664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기정	소로	3	49	4	국지 도로	44	소로 2-128	창선면 진동리 674전	일반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6호선	중로2-6호선	○ 도로구역 및 기종점 변경	○ 현황을 반영한 지적분할 결과에 따라 도로구역을 조정함.
소로2-127호선	소로2-127호선	○ 도로구역 및 기점 변경	○ 현황을 반영한 지적분할 결과에 따라 도로구역을 조정함.

남 해 군 공 보

(98) 제 710 호

2022년 1월 11일

나)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소공원	소공원	창선면 진동리 653전	301	-	301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다) 하수도(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공하수처리시설	창선면 진동리 674전	434	-	434	남해군 고시 제2018-129호 (2018.08.30)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가)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기정	창선면 진동리 637전	6,471	감)1,270	5,201	남해군 고시 제2019-136호 (2019.10.24)	
			변경	창선면 진동리 639전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구역변경 - A = 6,471㎡ → 5,201㎡ (감 : 1,270㎡)	○ 현황을 반영한 지적분할 결과에 따라 주차장 구역을 변경함.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1) 기정

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1	1	3,447	진동리 667 전	3,447	주거용지
2	2	3,375	진동리 668 임	3,375	
3	3	1,001	진동리 644 전	1,001	관리사무소
4	4	4,362	진동리 678 전	4,362	커뮤니티센터

5	5	434	진동리 674 전	434	공공하수처리시설
6	6	301	진동리 653 전	301	소공원
7	7	2,241	진동리 665 전	2,241	조성녹지
8	8	11,839	진동리 669 전	11,839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I	I	4,208	진동리 680 전	4,208	관광휴양시설 (야외휴게공간)
II	II	45,015	진동리 687 전	45,015	관광휴양시설 (특별계획구역)
III	III	6,471	진동리 637 전	6,471	주차장
IV	IV	10,574	진동리 산197-6 임	10,574	조성녹지
V	V	9,925	진동리 산197-37 임	9,925	
VI	VI	63,026	진동리 산197-17 임	63,026	원지형보전녹지

2) 변경

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1	1	3,447	진동리 667 전	3,447	주거용지
2	2	3,375	진동리 668 임	3,375	
3	3	1,001	진동리 642 대	1,001	관리사무소
4	4	4,362	진동리 678 전	4,362	커뮤니티센터
5	5	434	진동리 674 전	434	공공하수처리시설
6	6	301	진동리 653-1 전	301	소공원
7	7	2,241	진동리 665 전	2,241	조성녹지
8	8	12,564	진동리 669 전	12,564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I	I	4,208	진동리 680 전	4,208	관광휴양시설 (야외휴게공간)
II	II	45,015	진동리 687 전	45,015	관광휴양시설 (특별계획구역)
III	III	5,201	진동리 639 전	5,201	주차장
IV	IV	10,574	진동리 산197-6 임	10,574	조성녹지
V	V	9,925	진동리 산197-37 임	9,925	
VI	VI	63,026	진동리 산197-17 임	63,026	원지형보전녹지

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2	1, 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나목. 단,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하며 편의점은 제외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3	3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4	4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사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 1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6	6	용도	허용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I	I	용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관광사업중 ·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련시설 · 제6호 유원시설업 관련시설 · 제7호 관광 편의시설업 관련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 가목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련시설 · 나목 관광농원사업 관련시설 ○야외휴게공간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 16미터 이하
		주차장		○「주차장법」에 의하여 해당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III	III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해당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힐링빌리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창선면 진동리 산197-6번지 일원	45,015	-	45,015	

남해군 고시 제2021-200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남 해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 :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사유
 - 가. 목적 : 본 과업은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의 복원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천의 범람을 예방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나. 공사개요
 -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북변1교 재가설 및 연결호안정비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5-1번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당초)2019. 1. ~ 2021. 12.
(변경)2019. 1. ~ 2022. 3.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붙임 참조)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경상남도 남해군 환경물관리단(☎055-860-3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1-20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변경)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봉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환경물관리단장)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 점용목적 :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 변경사항
 - 당초 허가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변경 허가기간 : 2019. 1. 1. ~ 2022. 3. 31.
6.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5-1번지 일원
7. 점용면적 : 512㎡

남해군 고시 제2021-204호

부윤2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부윤2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부윤2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구도생생화관 신축 : 주민공동이용시설 1식(1층 신축, 연면적 A=241.51m²), 개수대 1식(A=47.58m²)
 - 친환경 생태주차장 조성 : A=1,809m²
 - 지역소득증대
 - 별천지 캠핑장 조성 : 캠핑 사이트 30개면, 기타 전기 등 부대시설 1식
 - 지역경관개선
 - 해안생생로드 조성 : 횡단보도 1식, 갯벌체험장 진입로 1식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정보화 구축
4. 총 사업비 : 1,720백만원(국비 72, 지방비 1,648) *자부담 57.6백만원 별도
5.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4년간)
6. 위치 :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부윤2마을 일원
7. 사업의 효과 : 부윤2 마을의 정주여건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소득증대 추진으로 지속적인 마을 발전 도모
8.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9.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1-205호

초전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고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전항 어촌뉴딜300사업’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초전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업의 목적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고령자, 귀어·귀촌인을 포함한 초전주민이 모두 화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삶터 조성을 통한 초전항 일대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비 소요액 : 9,852백만원(국비 6,829.2, 지방비 2,926.8)

소득사업 자부담 96백만원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방파제 연장, 부잔교 조성, 어민 작업공간 조성, 해안 안전시설 조성
- 특화사업: 초전 활력센터 조성, 교통 편의시설 개선, 방풍림 정비
- S/W사업: 지역주민교육, 컨설팅, 홍보, 지역협의체 운영
- 기타 부대비용

나) 사업의 구역: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540-1 일원(초전항)

5. 사업예정기간 : 2021년 ~ 2023년(3년간)

6. 사업의 효과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안전시설 강화를 통한 재난재해에도 안전한 항을 조성, 지역 내 공동체 의식 강화와 귀어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기반마련과 관광객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초전 주민들의 삶의 질 보장, 주민주도형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것임

7.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위탁시행자: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8.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사업비	비고
① 공통사업	방파제 연장 사업	2,935.0	
	부잔교 조성사업	523.0	
	어민 작업공간 조성사업	388.0	
	해안 안전시설 조성사업	613.0	
	소 계	4,459.0	
② 특화사업	초전 활력센터 조성사업	1,975.5	자부담별도
	교통 편의시설 개선	939.5	
	방풍림 정비 사업	181.0	
	소 계	3,096.0	
③ S/W사업	지역주민교육, 컨설팅, 홍보, 지역협의체 운영	303.2	
④ 부대비용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위탁수수료 등	1,897.8	
합 계(①+②+③+④)		9,756.0	

※ 세부사항은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 타

기본계획서는 남해군청 해양수산과(한국어촌어항공단 동남해지사)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남해군 고시 제2021-206호

장항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고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항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장항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업의 목적

낙후된 어촌·어항을 환경 개선하고 어항, 어촌, 치유숲 등 공간의 연계를 통해 휴식, 생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곳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활력 도모

3. 사업비 소요액 : 7,427백만원(국비 5,163.9, 지방비 2,213.1)

소득사업 자부담 50백만원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 선착장 철거, 돌제 신설, 부잔교 및 도교 설치, TTP 보강, CCTV 3개소 설치
- 특화사업 : 노루목 센터 조성, 화전

농약 전수관 조성, 안전회차로 조성, 마을우물 보수 및

쉼터 조성, 장항천 안전난간, 안전조명 설치, 안전보안등 설치, 마을입구
입간판설치, 마을통합안내 시설물설치

- S/W사업 : 지역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역협의체 운영
- 기타 부대비용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장항항 일원

5. 사업예정기간 : 2021년 ~ 2023년(3년간)

6. 사업의 효과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대상지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휴식, 생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 됨, 또한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 주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토대를 마련하여 활력 넘치는 어촌공간으로 거듭남

7.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위탁시행자: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8.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사업비	비고
① 공통사업	선착장 철거	709.0	
	돌제 신설	1,369.0	
	부잔교 및 도교 설치	200.0	
	TTP 보강	612.0	
	CCTV설치	15.0	
	소 계	2,905	
② 특화사업	노루목센터 조성	1,900.0	자부담별도
	화전농악 전수관 리모델링	378.0	
	안전회차로 조성	100.0	
	마을우물 경관개선 및 쉼터 조성	68.0	
	장항천 안전난간, 안전조명 설치	100.0	
	안전보안등 설치(장항숲일대)	46.0	
	마을입구 입간판 설치	30.0	
	마을 통합안내 시설물 설치	20.0	
소 계	2,642		
③ S/W사업	지역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역협의체 운영	401.0	
④ 부대비용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위탁수수료 등	1,429.0	
합 계(①+②+③+④)		7,377	

※ 세부사항은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 타

기본계획서는 남해군청 해양수산과(한국어촌어항공단 동남해지사)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남해군 고시 제202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화천(지방하천)
2. 성 명 : 전천0 외 1명
3. 주 소 :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20번지 외 1
4. 점용목적 : 진입로 및 구조물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삼동면 봉화리 1020번지 외 1
6. 점용면적 : 32㎡, 24㎡
7. 점용기간 : 2022. 1. 1. ~ 2026. 12. 31.

남해군 고시 제2022-4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4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67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제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	13281	도근점	중부	252301.775	275365.626	128°03'6.5319"	34°49'53.4912"	2021.12.02.	삼동면 지족리 288-2	철재	남해군정	
2	13282	도근점	중부	252281.958	275449.089	128°03'6.4090"	34°49'51.3616"	2021.12.02.	삼동면 지족리 277-2	철재	남해군정	
3	13283	도근점	중부	252062.385	275671.230	127°54'35.3216"	34°49'52.8348"	2021.12.02.	삼동면 지족리 240-14	철재	남해군정	
4	13284	도근점	중부	249682.679	292105.012	127°54'40.2407"	34°49'52.2554"	2021.12.02.	삼동면 지족리 207-4	철재	남해군정	
5	13285	도근점	중부	249583.548	292041.665	127°54'45.5675"	34°49'50.4325"	2021.12.02.	삼동면 지족리 196-2	철재	남해군정	
6	13278	도근점	중부	249547.573	291996.158	127°54'43.7238"	34°49'0.6830"	2021.11.25.	삼동면 동천리 267	철재	남해군정	
7	13279	도근점	중부	249503.557	291906.472	127°59'47.3901	34°48'59.8107"	2021.11.25.	삼동면 동천리 264	철재	남해군정	
8	13280	도근점	중부	249458.182	291757.580	127°59'48.7614	34°48'58.3410"	2021.11.25.	삼동면 동천리 산260-1	철재	남해군정	
9	15220	도근점	중부	249445.954	291624.774	127°59'47.9083	34°46'9.5082"	2021.11.25	남면 당항리 산291-1	철재	남해군정	
10	15221	도근점	중부	249402.954	291519.187	127°58'56.3359"	34°46'12.1542"	2021.11.25	남면 당항리 49	철재	남해군정	
11	15222	도근점	중부	238850.438	287351.396	127°58'55.0200"	34°46'8.8616"	2021.11.25	남면 당항리 산241-1	철재	남해군정	
12	15223	도근점	중부	238780.156	287442.634	127°58'53.3835"	34°46'4.9076"	2021.11.25	남면 당항리 31-6	철재	남해군정	
13	12704	도근점	중부	238749.949	287592.998	127°58'51.0144"	34-43-16.0501	2021.11.29	상주면 상주리 산 138-1	철재	남해군정	
14	12705	도근점	중부	255851.852	284333.653	128°00'34.6167"	34-43-17.0244	2021.11.29	상주면 상주리 산 140-1	철재	남해군정	
15	12706	도근점	중부	255748.097	284430.781	128°00'34.9842"	34-43-18.2892	2021.11.29	상주면 상주리 497	플라스틱	남해군정	
16	19371	도근점	중부	255553.723	284488.925	128°00'34.3257"	34°50'43.7711"	2021.12.01.	창선면 지족리 산162-1	철재	남해군정	
17	19372	도근점	중부	248873.511	282491.414	128°00'37.9457"	34°50'42.8728"	2021.12.01.	창선면 지족리 588-5	철재	남해군정	
18	19373	도근점	중부	248791.657	282659.372	128°00'41.7221"	34°50'42.6174"	2021.12.01.	창선면 지족리 586-7	철재	남해군정	
19	19374	도근점	중부	248669.942	282611.008	128°00'46.0583"	34°50'41.9051"	2021.12.01.	창선면 지족리 586-7	철재	남해군정	
20	19375	도근점	중부	253469.634	290681.875	127°50'39.5778"	34°51'32.1364"	2021.12.01.	창선면 상죽리 294	철재	남해군정	
21	19376	도근점	중부	253454.908	290623.237	127°50'35.0222"	34°51'30.5502"	2021.12.01.	창선면 상죽리 662	철재	남해군정	
22	19377	도근점	중부	253433.273	290548.876	127°50'50.4606"	34°51'28.1607"	2021.12.01.	창선면 상죽리 160-4	철재	남해군정	
23	19378	도근점	중부	246603.647	285158.198	127°50'55.862"	34°51'27.6232"	2021.12.01.	창선면 상죽리 162-3	철재	남해군정	
24	19379	도근점	중부	246473.351	285193.442	127°50'58.8127"	34°51'27.6074"	2021.12.01.	창선면 상죽리 153-5	철재	남해군정	
25	19380	도근점	중부	246383.600	285116.021	127°49'46.6373"	34°51'27.0700"	2021.12.01.	창선면 상죽리 101-29	철재	남해군정	
26	16108	도근점	중부	247586.788	281598.733	127°49'55.2825"	34°47'56.4748"	2021.12.01.	서면 서상리 83-6	철재	남해군정	
27	16109	도근점	중부	247488.451	281474.145	127°50'0.356"	34°47'54.7623"	2021.12.01.	서면 서상리 316-2	철재	남해군정	
28	16110	도근점	중부	247433.577	281518.21	127°53'4.1835"	34°47'54.1171"	2021.12.01.	서면 서상리 129	철재	남해군정	
29	16111	도근점	중부	247421.175	281617.118	127°53'2.6935"	34°47'54.6185"	2021.12.01.	서면 서상리 40-2	철재	남해군정	
30	16112	도근점	중부	236905.499	289261.713	127°53'1.4074"	34°47'54.6806"	2021.12.01.	서면 서상리 30	철재	남해군정	
31	16113	도근점	중부	236948.395	289346.252	127°53'30.865"	34°52'23.6537"	2021.12.01.	서면 중현리 1433-8	철재	남해군정	
32	16114	도근점	중부	236837.891	289611.41	127°53'25.9287"	34°52'23.2748"	2021.12.01.	서면 중현리 1427-9	철재	남해군정	
33	16115	도근점	중부	258244.575	292375.748	127°53'27.6433"	34°52'24.6757"	2021.12.01.	서면 중현리 1322-1	철재	남해군정	
34	15224	도근점	중부	258294.93	292408.341	127°53'31.5304"	34°46'56.8415"	2021.12.06	남면 죽천리 산 7-1	철재	남해군정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제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35	15225	도근점	중부	258321.424	116.581	127°58'28.2851"	34°46'59.6854"	2021.12.06	남면 죽전리 25-1	철재	남해군청	
36	15226	도근점	중부	258331.215	122.681	127°58'31.6237"	34°47'0.4397"	2021.12.06	남면 죽전리 산 30-1	철재	남해군청	
37	10264	도근점	중부	258443.431	39.724	127°58'42.0017"	34°49'15.1879"	2021.12.10	남해읍 평리 809-2	철재	남해군청	
38	10265	도근점	중부	254321.493	47.871	128°00'39.1094"	34°49'12.0331"	2021.12.10	남해읍 평리 1489-1	기타	남해군청	
39	10266	도근점	중부	254268.335	47.031	128°00'40.4133"	34°49'10.2399"	2021.12.10	남해읍 평리 1485-3	기타	남해군청	
40	10277	도근점	중부	254241.448	50.291	128°00'41.9725"	34°49'9.809"	2021.12.10	남해읍 평리 662-5	기타	남해군청	
41	12077	도근점	중부	254132.806	40.599	128°00'44.5412"	34°43'26.3055"	2021.12.10	상주면 상주리 2088	기타	남해군청	
42	12078	도근점	중부	239638.807	34.158	128°00'44.4856"	34°43'27.6707"	2021.12.10	상주면 상주리 2079-4	철재	남해군청	
43	12079	도근점	중부	239544.965	18.393	128°03'23.8071"	34°43'24.0017"	2021.12.10	상주면 상주리 1707	철재	남해군청	
44	19381	도근점	중부	239577.852	17.715	128°03'22.2315"	34°54'57.6709"	2021.12.13.	창선면 대벽리 661	철재	남해군청	
45	19382	도근점	중부	243122.204	15.66	128°03'20.3672"	34°54'59.2940"	2021.12.13.	창선면 대벽리 599-1	철재	남해군청	
46	19383	도근점	중부	243213.993	15.645	128°03'20.7320"	34°55'0.1407"	2021.12.13.	창선면 대벽리 574	철재	남해군청	
47	19384	도근점	중부	243258.648	15.431	127°54'28.5277"	34°55'0.4370"	2021.12.13.	창선면 대벽리 570-2	철재	남해군청	
48	19385	도근점	중부	237452.941	7.907	127°54'28.4894"	34°55'4.0787"	2021.12.13.	창선면 대벽리 563-2	철재	남해군청	
49	19386	도근점	중부	237345.867	28.086	127°54'34.42"	34°52'48.9720"	2021.12.13.	창선면 가인리 산243-34	철재	남해군청	
50	19387	도근점	중부	237338.652	29.833	127°54'23.2154"	34°52'47.2607"	2021.12.13.	창선면 가인리 산243-31	철재	남해군청	
51	19388	도근점	중부	247355.777	32.297	127°54'27.0505"	34°52'46.4045"	2021.12.13.	창선면 가인리 17-36	철재	남해군청	
52	19389	도근점	중부	247275.314	48.323	127°54'26.6008"	34°52'42.8761"	2021.12.13.	창선면 가인리 17-34	철재	남해군청	
53	15227	도근점	중부	247219.753	25.782	127°56'10.0962"	34°44'56.8532"	2021.12.21	남면 홍현리 52-2	철재	남해군청	
54	15228	도근점	중부	251987.302	28.786	127°56'8.7159"	34°44'53.8083"	2021.12.21	남면 홍현리 48-4	철재	남해군청	
55	15229	도근점	중부	251976.553	4.83	127°56'7.9029"	34°44'54.8312"	2021.12.21	남면 홍현리 15-3	철재	남해군청	
56	15230	도근점	중부	251974.844	143.104	127°51'3.0869"	34°46'49.9277"	2021.12.22	남면 당항리 산159-5	철재	남해군청	
57	15231	도근점	중부	246906.551	164.015	127°51'4.7955"	34°46'52.8777"	2021.12.22	남면 당항리 산180	철재	남해군청	
58	15232	도근점	중부	246915.166	171.276	127°50'54.8276"	34°46'54.3301"	2021.12.22	남면 당항리 141	철재	남해군청	
59	12080	도근점	중부	246913.003	48.671	128°00'10.1019"	34°43'45.1535"	2021.12.23	상주면 양아리 2062	철재	남해군청	
60	12081	도근점	중부	248771.271	49.129	128°00'12.9410"	34°43'41.6896"	2021.12.23	상주면 양아리 산432	철재	남해군청	
61	12082	도근점	중부	248747.716	43.809	128°00'15.3657"	34°43'41.4618"	2021.12.23	상주면 양아리 2066-1	철재	남해군청	
62	16116	도근점	중부	248647.991	77.929	127°59'49.9663"	34°49'8.7501"	2021.12.24	서면 서호리 294	철재	남해군청	
63	16117	도근점	중부	248675.774	69.886	127°59'48.6720"	34°49'6.1272"	2021.12.24	서면 서호리 337-1	철재	남해군청	
64	16118	도근점	중부	248659.311	58.069	127°59'44.2008"	34°49'4.3939"	2021.12.24	서면 서호리 250	철재	남해군청	
65	19390	도근점	중부	248626.537	82.977	127°59'46.3511"	34°51'34.8711"	2021.12.28.	창선면 상신리 583-4	철재	남해군청	
66	19391	도근점	중부	248542.918	68.146	127°59'44.1733"	34°51'34.4989"	2021.12.28.	창선면 상신리 산48-1	철재	남해군청	
67	19392	도근점	중부	248652.275	56.758	127°59'54.2002"	34°51'34.4234"	2021.12.28.	창선면 상신리 산48-3	철재	남해군청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1796호

2023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공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440호)」 제15조(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에 따라 2023년도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신청방법을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남 해 군 수

□ 신청방법(요령)

- 1. 신청 대상자 : 지구별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어업인 등
- 2. 신청대상사업 : 2022년 해양수산사업 목록(붙임 참조) 및 신규사업
⇒ 신규사업은 대상목록에 없는 사업을 말함
- 3. 신청 기간 : 2022. 1. 4. ~ 2. 4일까지
- 4. 신청 기관 : 남해군(해양수산과), 읍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5.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신청사업 심사·검토 (남해군, 남해지원, 남해수협) → 사업적격 및 우선순위 검토 → 2023년 사업예산 신청(경남도)
- 6. 신청서류
 - 가. 사업신청서(군, 읍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남해지원, 남해수협에 비치)
 - 나. 사업계획서(지원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만 작성)

- 다. 보조사업 이력서(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을 받은 실적이 있는 신청자)
- 라.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록실적이 있는 경우)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 마. 어촌계의 경우 총회 회의록

□ 신청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원받은 중요재산(부동산, 주요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양도, 교환, 담보 등 시설처분의 제한을 받는다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의2
- 2022년 사업신청 후 미 선정된 자는 2023년도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붙임자료

- 1.2023년 해양수산사업 목록 2.신청서식 3.사업계획서 4.보조사업 이력서

2023년 해양수산업 목록

사 업 명	지원대상	지 원 율 (%)				지 원 내 용	담당팀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여성어업인바우처 지원사업	어업경영체등록된 여성어업인등	100		80	20	바우처 카드 지급	수산기획팀
생분해성 어구보급	통발, 자망, 복합 어업허가소유자	100	70	30		생분해성 어구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준단가 차액을 지원(보조)	어업지도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어선소유 어업인 (당해년도 미선정 경우 신규 신청필요)	100	30	30	40	어선 장비 설치, 기관 대체 등 (장비기종 파악 후 신청)	어업지도팀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	어선어업인 (10톤미만 소형어선)	100	30	30	40	초단파대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V-Pass 등 (장비기종 파악 후 신청)	어업지도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어촌계	100	50	50	-	톤당 1천만원 기준	어업지도팀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	정치성 어업 운영 어업공동체, 어업인	100	-	60	40	해상작업대, 고압세척기, 크레인, 양승기 등	어업지도팀
연안어선 안전설비 지원 사업	어선어업인 (10톤미만 소형어선)	100	-	80	20	어선별 맞춤형 안전장치 및 설치지원	어업지도팀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사업	어선어업인 (10톤미만허가어선)	100	-	60	40	기관개방 검사시 소요되는 부품구입비 지원	어업지도팀
친 환경에너지 보급	육상양식어업, 수산종자생산업	100	60	20	20	히터펌프, 열교환기 (대당 110백만원)	양식산업팀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지원	양식어업자	100		80	20	소규모 자동화 시설 (대당 30백만원)	양식산업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어업인, 가공업자, 어촌계, 수협 등 <지원요건> -부지가 확보된자 -1년이상 운영실적	100		60	40	가공시설, HACCP시설 (개소당 국비10억원 한도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별도서식임	양식산업팀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 활성화 지원	QC 지정업체	100		60	40	제품가공 기계·장비, 위생·안전시설 등	양식산업팀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 상품화 지원	청경해 브랜드사용 지정업체	100		60	40	박스 등 포장재 제작, 브랜드 홍보물 제작, 할랄 식품개발 및 수출상품화 사업	양식산업팀

남 해 군 공 보

(116) 제 710 호

2022년 1월 11일

사 업 명	지원대상	지 원 율 (%)				지원내용	담당팀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	어류양식중이고 방역교육이수자 (최근2년간 4시간)	100	30	30	40	백신 또는 면역증강제 구입비용	양식산업팀
면역증강제 공급	가두리양식어업자, 육상해수양식어업자	100		60	40	면역증강제 구입비용 면적당 500만원 이내 (해상가두리 1ha, 육상수조식 3,000㎡ 기준)	양식산업팀
가두리시설 현대화	가두리양식어업자 (적조피해어가우선)	100		70	30	PE재질 가두리 제작 (ha당 210백만원한도)	양식산업팀
고수온 대응지원	육상 양식어업인, 해상 양식어업인	100	80		20	액체산소공급기, 차광막 산소발생기, 자충해수공급장치, 액화산소, 얼음 등	양식산업팀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	가두리양식어업인	100		80	20	폐사체 처리기 (대당 50백만원한도)	양식산업팀
다목적해상공동 작업대설치지원	어촌계, 공동체	100		80	20	해상작업대 (대당 100백만원이내)	양식산업팀
양식어장고도화 시설지원	어촌계, 공동체	100		80	20	패류선별기(작업대 포함) 등 고도화 시설	양식산업팀
패류지역특화품종 육성	패류양식단체, 패류양식어업인	100		80	20	개체굴 자동채취기, 흡합자동채묘기 등	양식산업팀
경남 주력어종 스마트 공동 선별·이동 시스템 보급	가두리양식협회, 어업인단체 등	100		80	20	양식어류 선별기 및 카운터기 등	양식산업팀
양식업 공동 생산시설 위생 개선사업	양식면허(우렁챙이)를 받아 경영중인 어업인 또는 단체	100	50	30	20	공동작업대, 위생시설 장비 (살균 소독장비) 등	양식산업팀 (신규)
불가사리·성게 구제	어촌계, 단체 등	100		100		kg당1,000원(습중량) kg당1,000원(습중량)	해양보전팀
바다유입쓰레기 차단시설	어촌계	100		100		바다유입 하천소재 어촌계	해양보전팀
폐유저장탱크 설치사업	어촌계	100		100		지정받은 어항에 폐유보관시설 설치	해양보전팀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굴박신가공업체, 단체, 어촌계 등	100	20	60	20	패각 자원화(비용) 처리비용 지원(운반비)	해양보전팀
연안변 방치 페스티로폼 수매	어촌계	100		100		페스티로폼 수매비용	해양보전팀

사 업 명	지원대상	지 원 율 (%)				지원내용	담당팀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양식어장 정화사업	어촌계	100	80	20		바닥경운, 해양쓰레기수거, 마사토살포	해양보전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어촌계	100		80	20	어장기반 및 자원조성	수산자원팀
낙시터 환경개선사업	어촌계	100		100		유어장 및 자연발생 낙시터 ha당1백만원	수산자원팀
마을어장개발사업	어촌계	100		70	30	종자 구입비용 (개소당 30백만원)	수산자원팀
수 산 종자 매입방류 사업	어촌계	100	80	20		어류, 패류(개조개, 왕우럭), 갑각류등	수산자원팀
해삼씨뿌림 사업	어촌계	100	60	30	10	해삼종자매입방류	수산자원팀

※ 위 사업 내용은 2021년도 사업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업담당별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담당팀 및 연락처]

대 상 사 업	담당부서	연락처	비 고
체험마을, 청년어촌정착, 여성어업인바우처등	수산기획팀	860-3341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연근해 어선 안전설비 관련 지원 사업 등	어업지도팀	860-3351	
수산물 가공·유통분야 사업, 양식어장(육·해상) 관련 시설·장비 사업, 친환경 부표 공급, 면역증강제공급, 백신공급사업 등	양식산업팀	860-3361	
어촌뉴딜300사업 등	연안관리팀	860-3371	
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폐각처리지원, 폐유저장시설, 바다유입쓰레기 차단시설	해양보전팀	860-3376	
낙시터환경개선사업, 마을어장개발사업, 해삼씨뿌림 사업, 마을앞바다소득원	수산자원팀	860-3481	

2023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영여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졸업)	과(중퇴)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예정지 (번지기재)	남해군 읍,면 번지(리 지선)	어업면허(허가)				
			종류	면허(허가)번호(처분기관)			
사업비 (천원)	계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청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입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입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입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회의록(어촌계, 법인 등)
 3. 대출신청자료 1부(융자사업 대상자에 한함)
 4. 경영실태 확인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 확인자)
 5. 보조사업 이력서(전체 신청자 대상)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 자료는 대출 신청액이 있을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단위:천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사업내용	비고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세부사업명	산출기초	비고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단위: 천원)

합 계	보조금	용자금	자부담	비고

남해군 공고 제2022-2호

공시송달(보상협의)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2. 사업의명칭 :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 4. 공고기간 : 2022년 1월 3일 ~ 2022년 1월 17일
-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2. 1. ~ 2022. 2.
 - 장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재난안전과)
(T: 055-860-3295, F: 055-860-3727)
- 6.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우리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2통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기재) 1통
 - 통장사본, 인감도장
-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공시송달대상 토지 등의 표시]

[붙임]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성명	주 소	
소재지 (남해군)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권리의종류	
					도
삼동면 봉화리	1275-2	도	53.0	신주*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남해군 공고 제2022-3호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활동 제도 마련 조항이 신설(2019. 12. 3)됨에 따라 (해상)안전보안관 제도의 활성화와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다. 해상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라. 교육임기 및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마.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1월 23일까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6,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전화 055-860-3422,342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문화 및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해상안전보안관”이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상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상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해상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해상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해상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현지 바다지형에 밝은 지역주민으로서 해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6. 해군 전역자 및 해양경찰 퇴직자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해상안전보안관의 활동) 해상안전보안관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낚시객 및 낚시어선 등 안전계도
2. 해안 안전시설물 점검 및 순찰
3.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 보호 관련 활동
4. 해상 안전 관련 위반 행위 신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등” 이라 한다)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등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등에 각각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소속 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등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등의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보안관등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촉 당시 소속된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11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등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남해군 공고 제2022-4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남 해 군 수

1. 2021년 4분기 임대차계약(임대조건) 신고 현황

신고일	임대주택 도로명주소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021. 10. 1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447-46(창선면) 2동	110,000,000	0
2021. 11. 1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248-1 광명홈타운 B동 201	30,000,000	200,000
2021. 11. 1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나길 24 주1동 401실	10,000,000	330,000

남해군 공고 제2022-1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유미0 외 4명	주소	통영시 용남면 장평신촌1길 00
	소하천명	복곡천 외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1번지 외		
	면적	179㎡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2. 1. 1. ~ 2026. 12. 31(유미0 외 4명)		
	목적 및 사유	진입로, 토지점용, 공작물 점용 등		

남해군 공고 제2022-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제3항 및 동법 제48조(과태료)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 및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빠른 시일 내 의무보험 가입 및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같은법 제51조(통고처분)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만약,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남해군 건설교통과 의무보험담당(055-860-3003, FAX055-860-37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 1. 공고대상 : 42리5474 등 12건
- 2. 공고기간 : 2022. 1. 5. ~ 2022. 1. 19.
- 3.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과태료(사전)처분 등
- 4. 문 의 처 :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차량등록담당자(☎055-860-30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반송분 내역

연번	구분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	비고
1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42라5474	고*연	미조면 조도길	1094848325334	이사감	2021.12.31	
2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23따4856	박*이	남면 남면로	1094848325308	이사감	2021.12.31	
3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16너4776	이*주	창선면 동부대로	1094848320748	이사감	2021.12.09	
4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예고	서울성북라0489	이*옥	남해읍 스포츠로	1094848320758	폐문부재	2021.12.15	
5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예고	81주5755	박*기	남해읍 망운로	1094848325349	이사감	2021.12.31	
6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예고	88서1110	주식***네스	남해읍 스포츠로	1094848325309	이사감	2021.12.31	
7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예고	27우9406	김*배	남해읍 망운로	1094848317878	기타	2021.12.03	
8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예고	32가5656	임*춘	남면 남면로	1094848320759	이사감	2021.12.09	
9	의무보험 과태료 독촉부과	70너6356	정*호	남해읍 화전로	1094848321801	기타	2021.12.14	
10	의무보험 과태료 독촉부과	80버4904	이*환	미조면 미조로	1094848321803	기타	2021.12.14	
11	의무보험 과태료 독촉부과	경남80배4296	김*길	남해읍 망운로	1094848321804	기타	2021.12.21	
12	의무보험 과태료 독촉부과	53누3490	김*윤	서면 남서대로	1094848318132	기타	2021.12.02	

남해군 공고 제2022-1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와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외 통지)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경과(최고) 안내 및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84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동법 제8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빠른 시일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검사지연 차량 대상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의제3항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벌칙)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 1. 공고대상 : 02머6800 등 41건
- 2. 공고기간 : 2022. 1. 5. ~ 2022. 1. 19.
- 3.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4. 문의처 :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차량등록담당자(☎055-860-3003)

자동차정기검사 최고명령서 및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연번	구분	차량번호	소유자	주 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	비고
1	정기검사 최고 안내	02머6800	정*열	서면 남서대로	1094848320022	기타	2021.12.17	
2	정기검사 최고 안내	12마0335	김*성	미조면 동부대로	1094848320026	기타	2021.12.14	
3	정기검사 최고 안내	24주2430	SUSA****RWIN	미조면 동부대로	1094848320028	이사불명	2021.12.06	
4	정기검사 최고 안내	54라0914	조*효	창선면 창선로	1094848320032	기타	2021.12.14	
5	정기검사 최고 안내	80구3559	한*범	미조면 미송로	1094848320034	기타	2021.12.14	
6	정기검사 최고 안내	92구7566	김*선	이동면 초양로	1094848320042	기타	2021.12.14	
7	정기검사 최고 안내	03소8003	김*식	남해읍 남해대로	1094848320054	이사불명	2021.12.06	
8	정기검사 최고 안내	12우9527	장*민	남해읍 남해대로	1094848320056	이사불명	2021.12.06	
9	정기검사 최고 안내	22주0287	김*연	남해읍 화전로	1094848324483	기타	2021.12.30	
10	정기검사 최고 안내	46고4731	신*울	상주면 남해대로	1094848324489	이사불명	2021.12.23	
11	정기검사 최고 안내	51로7814	곽*주	서면 남서대로	1094848324491	기타	2021.12.30	
12	정기검사 최고 안내	70노8867	김*희	남해읍 화전로	1094848324500	기타	2021.12.31	
13	정기검사 최고 안내	72리7218	주*진	남해읍 화전로	1094848324501	기타	2021.12.30	
14	정기검사 최고 안내	74머6340	(주)조은****니어링	남해읍 남해대로	1094848324502	이사불명	2021.12.23	
15	정기검사 최고 안내	86저0649	천*진	미조면 미조로	1094848324507	기타	2021.12.30	
16	정기검사 최고 안내	89머0791	주식회사****건설	남해읍 화전로	1094848324510	수취인불명	2021.12.23	
17	정기검사 최고 안내	92도0305	(주)신창***엔지	실천면 강진로	1094848324513	기타	2021.12.30	
18	정기검사 최고 안내	93루0125	(주)신창***엔지	실천면 강진로	1094848324515	기타	2021.12.30	
19	정기검사 최고 안내	96머6545	이*진	미조면 미송로	1094848324518	기타	2021.12.30	
20	정기검사 최고 안내	97버5072	김*현	남해읍 화전로	1094848324522	폐문부재	2021.12.31	
21	정기검사 최고 안내	09마0900	서*빈	남해읍 망운로	1094848324527	수취거절	2021-12-23	
22	정기검사 최고 안내	24주2430	SUSA****RWIN	미조면 동부대로	1094848324529	이사불명	2021-12-23	
23	정기검사 최고 안내	46고4731	신*울	상주면 남해대로	1094848325267	이사불명	2021-12-31	
24	정기검사 최고 안내	74머6340	(주)조은****니어링	남해읍 남해대로	1094848325275	이사불명	2021-12-31	
25	정기검사 및 운행정지 명령서	13두1738	김*열	상주면 양아로	1094848320077	기타	2021.12.14	
26	정기검사 및 운행정지 명령서	18주7311	김*민	남해읍 화전로	1094848320078	이사불명	2021.12.06	
27	정기검사 및 운행정지 명령서	71모4611	조*호	남해읍 망운로	1094848320081	기타	2021.12.13	
28	정기검사 및 운행정지 명령서	84로2730	정*주	남해읍 화전로	1094848320083	기타	2021.12.13	
29	정기검사 및 운행정지 명령서	84보6731	이*훈	미조면 미조로	1094848320084	기타	2021.12.14	
30	정기검사 및 운행정지 명령서	12우9527	장*민	남해읍 남해대로	1094848324549	이사불명	2021.12.23	
31	정기검사 및 운행정지 명령서	24주2430	SUSA****RWIN	미조면 동부대로	1094848325293	이사불명	2021.12.31	
32	정기검사 자연과태료 압류예고	84우9927	(주)농업회사법인*****생산자연합	남면 두양로	1094848320334	이사불명	2021.12.08	
33	정기검사 자연과태료 압류예고	98나3555	주식****네스	남해읍 스포츠로	1094848320335	이사불명	2021.12.08	
34	정기검사 자연과태료 압류예고	85버5824	김*옥	남해읍 선소로	1094848320338	기타	2021.12.15	
35	정기검사 자연과태료 압류예고	97디3961	박*준	이동면 남서대로	1094848320339	이사불명	2021.12.08	
36	정기검사 자연과태료 압류예고	46보5447	이*조	상주면 남해대로	1094848320341	이사불명	2021.12.08	
37	정기검사 자연과태료 압류예고	17구4076	홍*리	상주면 남해대로	1094848320342	이사불명	2021.12.08	
38	정기검사 자연과태료 압류예고	88가3841	양*우	창선면 흥선로	1094848320343	기타	2021.12.15	
39	정기검사 자연과태료 압류예고	경남99바6369	이*래	남면 남서대로	1094848320344	기타	2021.12.15	
40	정기검사 자연과태료 압류예고	84두1227	장*준	남해읍 화전로	1094848320345	주소불명	2021.12.08	
41	정기검사 자연과태료 압류예고	57서8497	윤*만	상주면 남해대로	1094848320349	이사불명	2021.12.08	

남해군 공고 제2022-22호

남해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궤도) 결정(변경) 재공람·공고

남해군 공고 제2021-929(2021.06.28.)호로 공람·공고한 『남해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궤도)결정(변경)』 중 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남 해 군 수

1.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궤도) 결정(변경) 공람·공고

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가. 군관리계획(클라인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 궤도) 결정(변경)

1)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2) 규 모 :

- 클라인 도이치랜드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 A = 38,802㎡
- 클라인 도이치랜드 지구단위계획구역 : A = 38,802㎡
- 군계획시설(궤도) : L = 1,852m, A = 14,236㎡

나. 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 <붙임1>

다. 관련도서 : 실음생략

3. 관계도서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4. 공람·공고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방법

가.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1) 남해군 도시건축과에서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

<붙임1>

■ 남해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제도)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A	클라인 도이치랜드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38,80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클라인 도이치랜드 개발진흥지구	○신설 A=38,802㎡	○클라인 도이치랜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개발진흥지구를 신규로 지정 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A	클라인 도이치랜드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38,80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클라인 도이치랜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38,802㎡	○산림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형 휴식·체험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38,802	100.0	
I. 관광휴양 시설용지	소계	16,381	42.2	
	근린생활시설	6,527	16.8	주차장 포함
	트리하우스	1,258	3.3	
	놀이시설	3,587	9.2	
	코스터	1,676	4.3	
	코스터승강장	203	0.5	
	모노레일(제도)	3,130	8.1	군계획시설(제도) 중복
II. 공공시설 용지	소계	8,922	23.0	
	진입도로	4,617	11.9	
	주차장	3,213	8.3	
	단지내도로	961	2.5	
	카트주차장	131	0.3	
III. 녹지용지	소계	13,499	34.8	
	조성녹지	1,554	4.0	
	원형녹지	11,945	30.8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271	삼동면 물건리 380-2	삼동면 물건리 산84-1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1	B	10	국지 도로	64	소로2-112	소로1-A	일반 도로	-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A	○신설 -B = 10m, L = 271m	○ 클라인 도이치랜드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	소로1-B	○신설 -B = 10m, L = 64m	○ 클라인 도이치랜드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삼동면 물건리 산93-3번지 일원	-	증)3,213	3,213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주차장	○신설 (A=3,213㎡)	○ 클라인 도이치랜드 및 독일마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	I	16,381	I-1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6,527	근린생활시설
			I-2	삼동면 물건리 산63번지 일원	1,258	트리하우스
			I-3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1,787	놀이시설
			I-4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1,800	놀이시설
			I-5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1,676	코스터
			I-6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203	코스터승강장
			I-7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3,130	모노레일 군계획시설(케도)중복

2)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II	1,092	II-1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961	단지내도로
			II-2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131	카트주차장

3) 녹지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III	13,499	III-1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516	조성녹지
			III-2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1,038	조성녹지
			III-3	삼동면 물건리 산63번지 일원	7,183	원형녹지
			III-4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2,929	원형녹지
			III-5	삼동면 물건리 산63번지 일원	455	원형녹지
			III-6	삼동면 물건리 산86번지 일원	1,378	원형녹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구 분		계획내용
I-1	용 도	지정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제6호 유원시설업, 제7호 관광 편의시설업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 이	●6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I-2 ~ 6	용 도	지정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제6호 유원시설업, 제7호 관광 편의시설업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용적률	●160%
		높 이	●4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I-7	용 도	지정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에 의한 관광 편의시설업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용적률	●160%
		높 이	●4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2) 공공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구 분		계획내용
II-1	용도	지정용도	●단지내도로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도면참조	
II-2	용도	지정용도	●카트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도면참조	

3) 녹지용지

도면표시번호	구 분		계획내용
III-1 III-2	용도	지정용도	●조성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도면참조	
III-3 III-4 III-5 III-6	용도	지정용도	●원형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도면참조	

4.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궤도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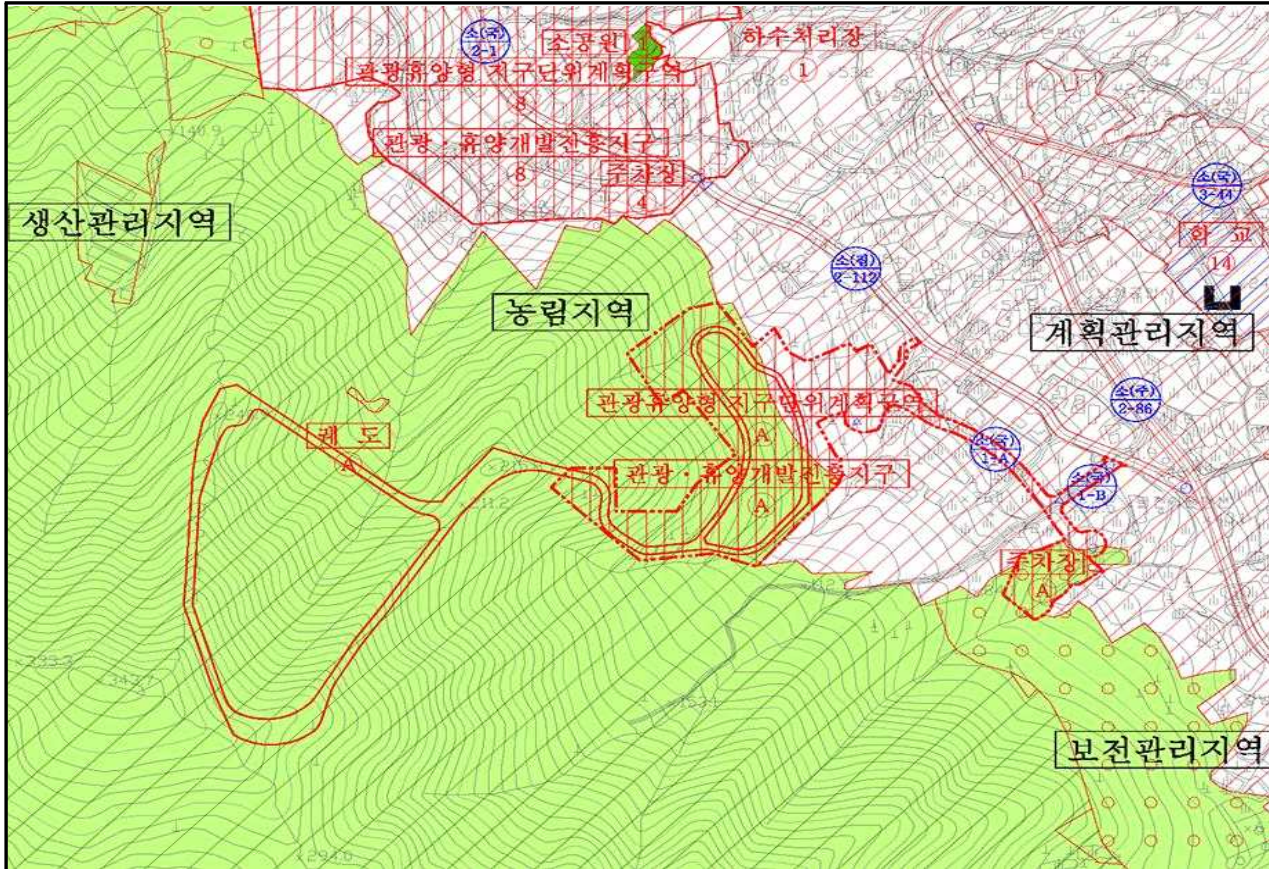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A	궤도	삼동면 물건리 산84-6	삼동면 물건리 산84-6	-	1,852 (830)	14,236 (3,771)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결정

※ ()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결정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궤도	○신설 A=14,236㎡	○남해군의 차별화된 관광시설 도입과 관광·레저·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궤도 시설을 신설함

▣ 군관리계획 결정도



남해군 공고 제2022-23호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 다.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5조 ~ 제7조)
- 라. 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안 제8조)
- 마. 운영세칙(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1월 6일 ~ 1월 26일까지(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성과담당관 정책기획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3, 팩스 055-860-3703
이메일 kjj0321@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성과담당관 정책기획팀(☎ 055-860-3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 당선인(「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